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원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직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영”이란 직인의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 및 규격)”을 “(글자의 내용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은 한글 전서체”를 “글자는 한글”로, “그”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인의 글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별지 제2호서식]

직 인 폐 기 신 고 서
기 관 명

문서번호 : (전화번호 :)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직 인 명			
폐 기 사 유			
폐기대상 직인처리	폐기에정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소 속 :	성 명 :
폐 기 직 인	직 급 :		

15012-08911일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학교 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 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이 규칙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교육법 제81조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영”이란 직인의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제4조(글자의 내용 및 규격) ① -
② (생 략)	--- 글자는 한글-----
	-----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54